최 신 판 례 예 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의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 세 면제대상에 해당한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질 의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 제 여부

회 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예금자보호법」제 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첫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자본거래-2080, 2022.05.23

▮질 의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에 설치한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I호 및 2호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1.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 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 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 에 포함되는 것이며,
-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3. 기해석사례(법인, 법인46012-622, 1998.03.12. 및 법규과-660, 2013.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 05 · 17 www.eAnSe.com 13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196, 2022.10.10

▮질 의

- 질의법인은 에너지 전문사업 지주회사로 싱가포르에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100% 해외 자회사(이하 '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영위 중임
- '21.12.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질의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해석에 대해 질의함

질의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 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 여금'의 의미

▮회 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직전사업연도에 거래 정지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직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로 계산함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 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 의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 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 § 157 (기))
-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구)소 득령 § 157⑦(2))

▮회 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